

사회복지 주간 동향(23.7.3.~7.7.)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30가구에
복달임 꾸러미**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주)가 다가오는 초복을 맞아 취약계층 30가구에 복달임 꾸러미(삼계탕, 누룽지, 제철과일 등)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힘

- 이 위원장은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외롭게 지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도록 꾸러미를 잘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겠다”고 말함
-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해 여름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달임 꾸러미를 전하는 것은 물론 어버이날 행사, 반찬 봉사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1동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 진행



- * 용인특례시 처인구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8일 지역 내 운학2동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봉사를 진행
 - 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학생 서포터즈 ‘우리동네 용반장’ 학생들이 함께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서포터즈 학생들은 마을회관 주변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고, 이·미용 봉사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학생들이 담당
 -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말벗이 되어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학생 서포터즈에게 감사하다”며 “동부동은 지역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부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접 수확한 감자 140kg 기탁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위원장 한의동)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7kg짜리 감자 20박스(총 140kg)를 기탁했다고 28일 밝힘
- 동은 기탁받은 감자를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한 상자씩 전함
 - 한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직접 기른 햇감자를 홀로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성껏 재배한 감자를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함
 - 감자를 받은 한 어르신은 “농사짓느라 수고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일일이 나눠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3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외식 쿠폰 지원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을 위해 외식 쿠폰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힘
 - 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여름 방학을 앞둔 지난 28일 23가구 아동들에게 4만원 상당의 외식쿠폰을 전달했다. 이 쿠폰은 오는 9월까지 사용 가능
 - 쿠폰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해당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음
 - 목인석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위원들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역북동 맞춤형복지팀)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어르신 등 50가구에 반려식물 전달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2동은 지난 29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 가구에 반려식물인 표고버섯 재배 키트 50세트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힘
- 위원들은 50가구에 재배 키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함께 살핌
 - 표고버섯 재배 키트는 배양토에 표고버섯을 심은 제품으로 물만 주면 버섯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식용으로 활용 가능
 - 박혜정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며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2동 맞춤형복지팀)

6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풍덕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새 이불 지원



- *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경진, 민간위원장 이원구)는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새 이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힘
-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방문 과정에서 이불 하나 장만하기 부담스러워 낡고 오래된 이불을 계속 사용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특화사업을 마련함
- 지난 29일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여름에 시원하게 덮을 수 있는 새 이불을 선물하고 낡은 이불을 수거해 폐기
 - 또 삼푸와 린스, 물티슈 등 생필품도 전하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안부를 살핌
 - 이 위원장은 “새 이불을 아낀다고 장롱에 넣어두고 낡고 현 이불을 계속 사용할 것이 염려돼 사용하던 이불은 직접 수거해 폐기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챙기며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특화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봉사에 참여해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관이 협력해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

7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상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돕기 성금 기탁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대순)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성금 60만4000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힘
- 협의체는 지난 17일 동이 개최한 제6회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한마음 축제에서 손수 부침개를 구워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번 성금을 마련함
- 동은 홀로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데 성금을 사용할 계획
- 안 위원장은 “평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온 위원들이 이번 행사에서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와 직접 부침개까지 만드는 등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데 적극 동참해줘 감사하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덕분에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한마음 축제가 풍성해짐, 자발적인 봉사에 이어 성금까지 기탁해 줘 감사하다”며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상현3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발표

디지털 교육·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디지털 시대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

-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으로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이번 대책은 대통령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보호아동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과제1. 보호대상아동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 및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학습,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
- ① (교육·학습) 인공지능(AI) 튜터 솔루션,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하여 아동복지 시설 아동의 기초학습역량 제고를 지원

- ② (문해력 향상) 인공지능(AI) 기반 시선 추적·분석을 통해 난독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장·문단 독해력 훈련을 지원
- ③ (정서 안정) 인공지능(AI) 스피커 및 인공지능 마음 건강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서 진단 및 심리 치료를 지원

과제2. 자립준비청년 교육

-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상위 교육과정 연계 등 추가 성장기회를 제공할 예정
- ① (수준별 교육)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취·창업 목적의 중·고급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초·중급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할 계획
- ② (밀착 상담·자문(멘토링)) 안정적 교육수료 및 진로탐색을 위해 이수상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
- ③ (지속성장지원) 수료생의 추가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상위 디지털 교육 과정을 연계 지원하고, 전문가 취·창업 특강 등도 운영할 예정

과제3. 디지털 진로 지원

- 디지털 시대에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
- ① (특구 채용연계) 취업 특강, 면접 행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채용 희망기업과 자립준비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
- ② (지역 채용)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 취업역량교육 및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등을 추진
- ③ (창업·창작 교육) 자립준비청년 대상 창업·창작 교육 등을 제공하여 디지털 분야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

과제4. 사회적 연대 강화

- 디지털 분야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간 상담·자문(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직업체험 및 디지털 기부를 활성화 해나갈 예정
- ① (상담·자문(멘토링) 지원)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정서 안정, 진로설계, 선·후배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
- ② (디지털 직업체험) 자립준비청년 및 기업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 방문, 인턴십 매칭 등 맞춤형 디지털 직업체험 지원도 추진
- ③ (디지털 기부) 민간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출신 롤모델 발굴·연계도 지속 추진할 예정
- * 비주얼캠프는 아동권리보장원과 난독증 개선 및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리드(Read)'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부 협약 체결('23.6.1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실시 >

< 2023년 7월부터 7개 시·군·구에서 실시 >

-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
- *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돌봄, 심리 지원, 건강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별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그간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출장비 등 원거리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
 - 또한,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닌 인근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제공기관이 등록된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7개의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각 시·군·구는 사업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
 - 전남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의 경우, 지역 내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 레크리에이션, 노후 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경북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과 산악지형으로 인해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충남 부여군은 주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용해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붙임1 지역별 서비스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				
사업수행지역 시도	시군구	제공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사업 계획
경북	울진군	청년마음 건강지원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내용)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 3개월간 10회의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울진군 소재 제공기관 에서 공공기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충남	부여군	정신건강 토달케어	- (대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 (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기능 수준·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증상 관리, 일상 생활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을 월 4회 제공	논산시 소재 제공기관 에서 출장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 (대상) 만 18세 이하 주의력 결핍 등 아동·청소년	지역 내 제공기관 지원 으로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
	공주시 서천군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 (내용) 언어, 놀이 심리 프로그램 등 월 4회 제공	
전남	고흥군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판소리 및 민요 교육, 월 8회 제공	여주시 소재 제공기관 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통합형(재활, 인지 기능, 웃음코칭) 프로그램, 주 1회 제공	신안군 소재 제공 기관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출장 방문하여 재활 프로그램 등 제공
	진도군 신안군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붙임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개요

- * (목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 (내용)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기관'을 선정, 서비스 제공에 소요
되는 출장비, 운영비 등을 거점제공기관에 지원
 - 거점제공기관은 등록된 기관 소재지 시·군·구 범위를 벗어나 취약지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 * (지역 선정기준) ①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제공기관이 없고, 현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
② 사회보장특별구역(8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구)등 복지기반이 취약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곳 등
- * (방식) 전국 공모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

< 취약지 지원사업의 전후 비교 >

현 재(As-is)	앞으로는(To-be)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에 사는 청년 A군은 이용이 어려웠음 ■ 도서 지역에 사는 B 어르신은 노인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도서 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제공기관도 부재해 이용이 불가능	■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A군이 사는 지역에 제공기관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 평소 느꼈던 우울, 불안으로부터 해소 ■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B 어르신이 사는 섬 지역에도 제공기관이 월 4회 방문해 마을회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보도자료 참조(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 실시

<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 *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2,123명·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아동 2,236명('23.4.23일 기준) 중 그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23.6.28일 기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수
 -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7월 7일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
- *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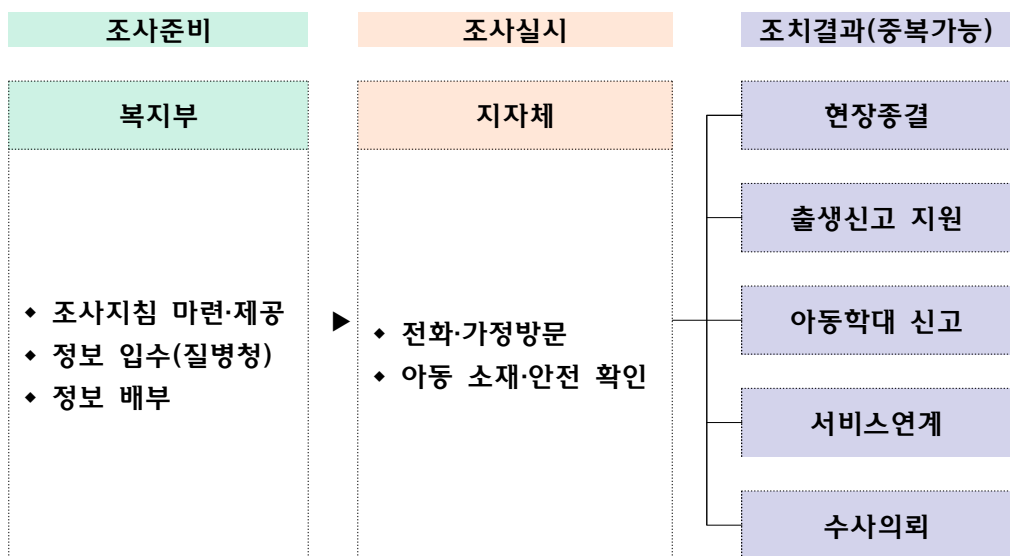
붙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개요

- * 전수조사 개요
 -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5~'22년생 아동 2,123명('23.6.28. 기준)
 - (방식) 지자체 행정조사 및 경찰수사 실시
 - (기간) 6.28.~7.7.(지자체 행정조사), 6.28.~(경찰 수사의뢰)
 - (조사내용)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출생신고 여부, 소재·안전 확인 등
 - (조치결과) 아동 소재·안전확인 후 필요한 조치(중복 가능)
 - (현장종결)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이며, ^아동학대 의심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출생신고 지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하되, 필요시 지자체장이 직권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4항)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시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
- (서비스 연계)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공적 급여, 예방접종 등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수사의뢰) 출생사실 부인, 조사거부, 아동 매매·유기 의심 시 등

* 주체별 역할 및 업무 흐름도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시”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6.28.) >

< 7월부터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작 >

- *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수)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
 -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시범 적용해 보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출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
 - 출범식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함께 함
 -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지님

붙임 1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목표)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방향)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
 - (기간·규모) '23.7월 ~ '25.12월(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예산) '23년 기준, 32.4억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2.7억 원, 6개월)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9.6월~'22.12월) >
 -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욕구 기반 보편적 제도 지향)
 -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 ※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16개) (노인 13)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 (장애인 2)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1) 경기 화성시
- (평가) 의료·주거·돌봄 분야별 서비스 확충, 다만 의료·돌봄 관련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 미흡, 병원입원 대체 재가의료 확충 저조

* 주요 내용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서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동 불편·거주환경 등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 (사업내용)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거동불편으로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 필요 대상자에게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 지자체(본청, 보건소) 내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연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서비스 연계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재가, 통합재가) / 생활지원 사회서비스(이동, 식사, 일상생활지원, 스마트돌봄 등) / 주거지원 서비스(케어안심주택, 돌봄주거단지, 주거환경 개선지원))

대상자별 서비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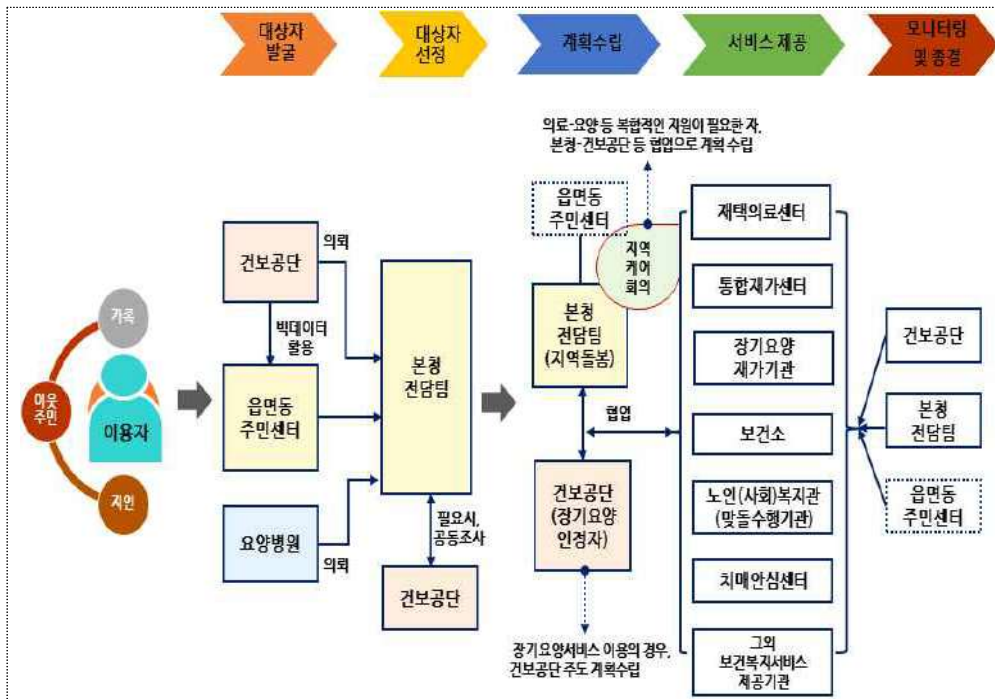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기본)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활용 등으로 서비스 제공량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 안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소('22.12) → 50개('23.上) 확대 계획
 - (추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재택의료·건강관리·기타 돌봄서비스 가능
- 장기요양 등급 심사 진행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 (기본)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 가사지원 서비스 등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
 - (추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방문의료·건강관리·기타 돌봄서비스 가능
-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 (기본)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과 연계
 - (추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병원 내 전담인력을(사회복지사 등)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본청)와 연계 업무 지원 가능

* 서비스 제공과정 및 전달체계

-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의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접수·신청

- (조사·계획수립) 통합지원 필요도 조사, 시군구 전담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돌봄계획 수립, 사례회의 통해 제공 서비스 지정 및 연계·조정 실시
- (서비스 제공·평가) 서비스 과정·결과 주기적 모니터링

< 필요도 조사도구 활용·적용시 흐름도 >



- (전담조직·인력) 신청·접수·발굴, 방문상담, 제공계획 수립 및 지역케어회의,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체계,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시군구 본청 내 전담 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시범사업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인력을 두고 ‘통합지원 상담창구’ 운영
- 건보공단 지사에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청 전담팀과 협업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대상자 정보공유, 업무지원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7월부터 운영

< 7월부터 18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실시 >

< 초기치매, 돌봄 사각지대 등 치매환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 >

<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 >

-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치매 중증화 전 사전 예방 및 복지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환자가 지닌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측면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의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4개 시군구(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1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시범 운영하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 과의 연계체계 구축 추진
- * 시범사업 주요내용
 - (전담팀 운영)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 관련 문제에 집중 개입, 치매환자의 치매상태 관리 지원
 - (선정기준 개선)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중재필요도 및 개별적 상황(가점)을 반영하여 대상 선정
 - (1단계)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대상자 선별
 - (2단계) 욕구의 복잡성, 문제의 심각성 등에 따라 점수화, 대상자군* 분류
 - (가점) 초기 치매환자, 75세 이상 고령 등의 경우 가점 부여
 - (관리기간 조정) (기존) 최종 종결 시기가 선정 시점부터 5년 이내로 종결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개선) 대상군별로 종결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종결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정기평가나 점검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변화 및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기타 종결사유(거부, 사망, 전출 등)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대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수준, 개인상태와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진행 또는 사례관리 연장, 대상자군 변경 등을 결정하는 활동
 -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의 개선방안 및 보완사항 등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

※ 보도자료 참조(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 어린이집 평가 제도의 절차 개선 등 보육정책의 합리성 제고 >

-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반영하는 등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보육제도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변경사항을 적시에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정된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안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1.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

- * 어린이집 현장평가일 사전고지 도입
 - 기존에는 어린이집 현장평가 시 평가주간만 통보하였으나,
 -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일을 사전고지하도록 하여,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절차 개선
 - 기존에는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 하였으나,
 -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소명하도록 한 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 기존에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 금번 지침 개정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까지 증빙서류 범위로 추가하여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기존에는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전에 장애영유아 3명을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반(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단, 지정 후 1년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됨, 그 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변동 없음)
- *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해당 시·도 내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에 한하여, 해당 시·도에서 교육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하도록 함
- * 시간제보육 운영을 원하는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은 별도의 시간제보육 보육실 13.2m²(1개반 당) 확보가 필요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 시간제보육 보육실 면적을 10.6m² 이상(1개반 당)으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3. 영유아의 권리 보호 강화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3.4.11, 시행 '23.10.12)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되어, 해당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신설
- 4. 직장어린이집 세제관련 지원기준 구체화
 - * 직장어린이집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구분 없이 안내되었던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하여,
 -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감면율 85%, '24.12.31.까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경감(경감율 50%, '24.12.31.까지)됨을 명확히 안내

※ 보도자료 참조(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7 증양정부 복지현안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국회 통과 >

< 202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

< 아동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

- *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별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국내입양 특별법 주요내용
 -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
 - ①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고, 입양절차가 진행, 이후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게 됨
 - ②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게 됨
 - ③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간의 결연(matching)은 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
 -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로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가능,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됨
 - ⑤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또는 연계
 - ⑥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 현재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이를 통해 체계적 기록관리,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
 - ⑦ 보건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국제입양법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의 국제입양 뿐만 아니라,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을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협약의 절차에 따라 진행
 - 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이하 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이하 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
 - ②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대상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음
 - ③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하여 아동적응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 이번에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것으로,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헤이그협약이 비준될 예정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8 중앙정부 복지현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3.)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 등 규정 >

- * 보건복지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됨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 ①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 간소화(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의 세부 범위, 추계 방식 등 전문적 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종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나,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의 재정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다만 재정추계를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재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 ② 재정·통계 전문위원회의 분리(제12조)
 -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
 - 신설되는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관련한 전문가 논의를 기반으로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증거 기반의 사회보장정책 분석·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
 - ③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제20조)
 - 2021년 12월 9일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2022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여건 및 정책 효과성 파악 등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수집·연계하여 사회보장제도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법령 미비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분석·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폭이 넓어져,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건강정보, 교육상태, 일자리 등이 추가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와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정책 관리·평가과정의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 사회보장제도 분석 예시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수급자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보장실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소득증대 효과 등

※ 보도자료 참조(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9

중앙정부 복지현안

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 (경찰청) 자살 변사자료 매월 제공, (소방청)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주야간 지정 등 우수과제 선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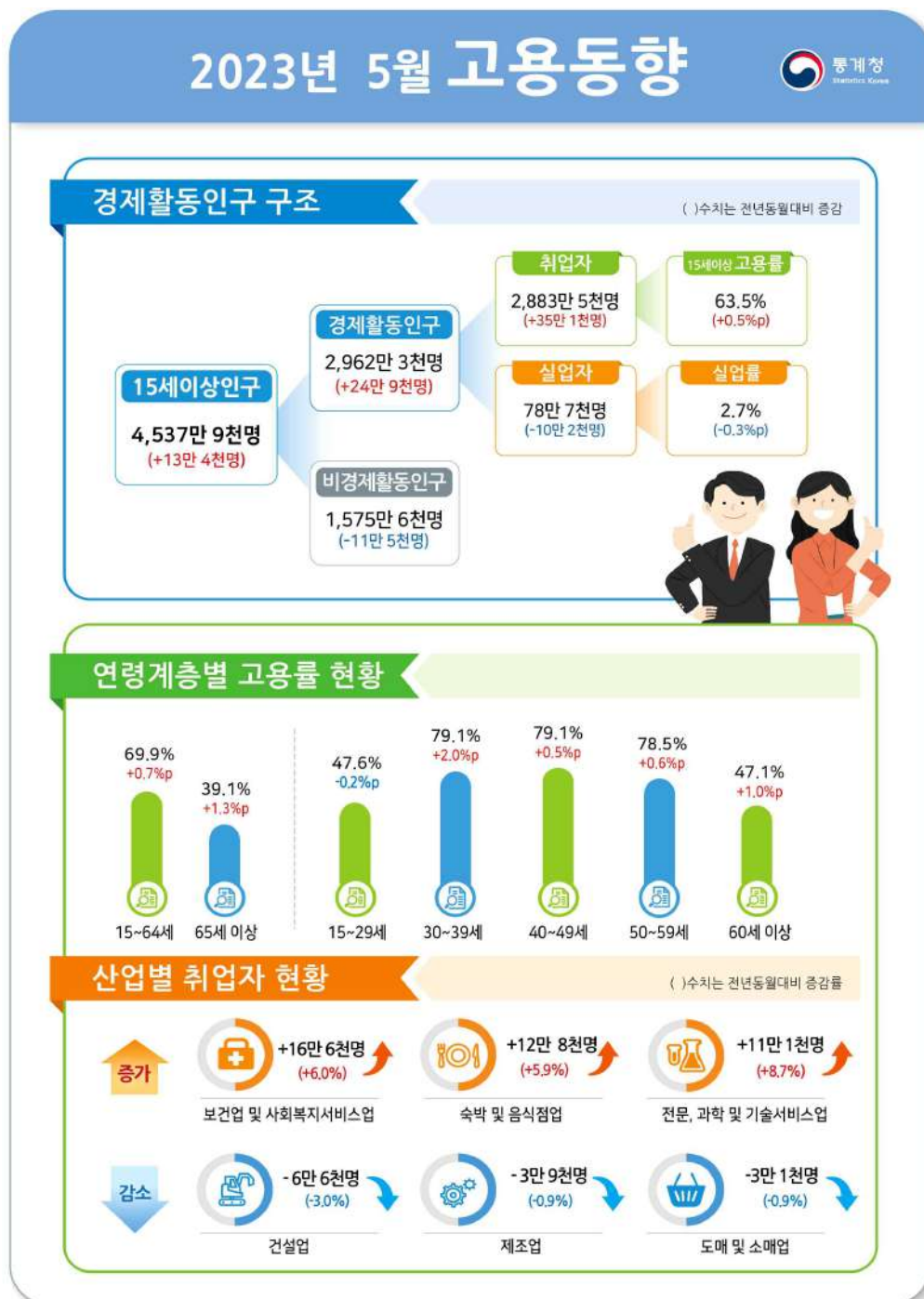
-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점검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2022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처로 통보하였다고 밝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추진 중이며,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6인)으로 점검위원회 구성)
- 2022년 19개 중앙부처가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과제는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
- 주요 우수 과제로 경찰청은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하여 신속한 자살동향 파악에 기여하였으며, 자살자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조
-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주·야간 공백없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알리고,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자살시도자의 자살사망을 감소에 기여함

※ 보도자료 참조(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년 5월 고용동향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